

# 정 정 신 고 (보고)

2015년 7월 17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:

- 투자전략 문구 명확화(대한민국 대표 주가지수 선물의 기초지수 -> KOSPI200 지수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15.5.13)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5.07.08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설명서 전체	투자전략 문구 명확화	대한민국 대표 주가지수 선물의 기초지수(이하 “대표지수”라 함)	<u>KOSPI200 지수</u> (이하 “대표지수”라 함)
제2부. 8. 나. 투자제한	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5.07.08. 시행)	[동일종목 투자제한] -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 가.~다. (생략) <u>(신 설)</u>	[동일종목 투자제한] -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
제2부. 14. 나. 과세 (5)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S-P 수익증권 가입자 :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15.5.13)	(추가)	[ <u>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]
제5부. 1. 가. (3) 투	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	-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

<p>자자총회 결의사항</p>	<p>영(2015.07.08. 시행)</p>	<p>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u>5의 5.(신설)</u></p> <p>6.~9. (생략)</p>	<p>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5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</p> <p>6.~9.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